|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관리 개혁 진일보 촉진 및 진실성ㆍ적법성 심사 강화에 관한 통지**회발[2017]3호, 2017년 1월 26일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자차구•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선전(深圳)•다롄(大連)•칭다오(靑島)•샤먼(厦門)•닝보(寧波)시 분국, 각 중자(中資)외환지정은행 :외환관리 개혁 및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며 무역•투자 원활화를 촉진시키고 거시적•신중 관리 구조하의 자본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국내 외환대출금의 위안화 환전 범위를 확대한다. 화물무역 수출 배경이 있는 국내 외환대출금의 위안화 환전을 허용한다. 국내기구는 화물무역 수출 대금으로 외환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원칙상 외환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2. 국내은행담보부 해외차입금을 국내로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채무자는 국내 자금대출 또는 지분투자 등 방식으로 담보부차입금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국내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이 국내은행담보부 해외차입의 담보책임을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외환결제는 은행 자체의 외환결제 관리에 포함시킨다.3. 다국적기업의 외환자금 집중운영 관리 원활화를 진일보 추진한다. 국내은행이 국제외환자금 주계정을 통해 흡수한 예금은 거시적•신중 관리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운용가능비율의 상한을 직전 6개월 일평균 예금잔고의 50%에서 100%로 조정하며 국내운용자금은 은행의 단기외채 잔고 지표를 점용하지 아니한다.4. 자유무역시범구 내 해외기구의 국내 외환계정 위안화 환전을 허용한다. 위안화로 환전한 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내은행은 다국적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기구•개인의 유효한 상업 증표•증빙을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5. 화물무역 외환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외환관리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기구는 '수출하는 자가 대금을 수취하고, 수입하는 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국제무역 외환 수취•지급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6. 경상항목하의 외환수입 해외 유보에 대한 통계를 강화한다. 국내기구가 다양한 사유로 수출 수입(收入) 또는 서비스 무역 수입(收入)을 해외에 유보하였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 인쇄발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2]38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 무역 외환관리 법규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회발[2013]30호) 등에 따라 외환관리 관련 등기•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통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7. 직접투자 외환 이윤 해외송금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 및 개선한다. 국내기구를 위하여 미화 5만달러 이상(5만달러 불포함)의 이윤 해외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은 진실거래의 원칙에 따라 해외로 송금되는 해당 이윤과 관련된 이사회 이익배당 결의서(또는 조합원 이익배당 결의서), 세무비안(備案)표 원본,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세무비안(備案)표 원본에 도장을 날인하고 송금금액과 송금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내기구는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기에 앞서 법에 따라 과거 연도의 적자를 보전하여야 한다.8. 해외직접투자의 진실성•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해외집적투자 등기 및 투자금 송금 수속을 이행하는 국내기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로 투자자금의 출처와 용도(사용계획)를 은행에 설명하고 이사회결의서(또는 조합원결의서)•계약서 또는 기타 진실성 증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업무전개 원칙에 따라 진실성•적법성 심사를 강화한다.9. 내국환•외국환 해외 자금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를 실시한다. 해외 자금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국내기구의 내국환 해외대출 잔고와 외국환 해외대출 잔고의 합계가 회계감사를 거친 그의 직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소유자권익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0.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린다.11. 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하며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외환관리국은 정책 실시 효과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수지 형세에 근거하여 정책을 조정한다. 이 통지가 공표되기 전의 규정이 이 통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이 통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각 분국•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최대한 신속히 그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중심지국•지국 및 외환지정은행에 전달하여야 하며 통지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推进外汇管理改革完善真实合规性审核的通知**汇发〔2017〕3号，2017年1月26日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为进一步深入推进外汇管理改革，简政放权，支持实体经济发展，促进贸易投资便利化，建立健全宏观审慎管理框架下的资本流动管理体系，现就有关措施通知如下：一、扩大境内外汇贷款结汇范围。允许具有货物贸易出口背景的境内外汇贷款办理结汇。境内机构应以货物贸易出口收汇资金偿还，原则上不允许购汇偿还。二、允许内保外贷项下资金调回境内使用。债务人可通过向境内进行放贷、股权投资等方式将担保项下资金直接或间接调回境内使用。银行发生内保外贷担保履约的，相关结售汇纳入银行自身结售汇管理。三、进一步便利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境内银行通过国际外汇资金主账户吸收的存款，按照宏观审慎管理原则，可境内运用比例由不超过前六个月日均存款余额的50%调整为100%；境内运用资金不占用银行短期外债余额指标。四、允许自由贸易试验区内境外机构境内外汇账户结汇。结汇后汇入境内使用的，境内银行应当按照跨境交易相关规定，审核境内机构和境内个人有效商业单据和凭证后办理。五、进一步规范货物贸易外汇管理。境内机构应当按照“谁出口谁收汇、谁进口谁付汇”原则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及时办理收汇业务，外汇局另有规定除外。六、完善经常项目外汇收入存放境外统计。境内机构因各种原因已将出口收入或服务贸易收入留存境外，但未按《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货物贸易外汇管理法规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2〕38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服务贸易外汇管理法规的通知》（汇发〔2013〕30号）等办理外汇管理相关登记备案手续或报送信息的，应于本通知发布之日起一个月内主动报告相关信息。七、继续执行并完善直接投资外汇利润汇出管理政策。银行为境内机构办理等值5万美元以上（不含）利润汇出业务，应按真实交易原则审核与本次利润汇出相关的董事会利润分配决议（或合伙人利润分配决议）、税务备案表原件、经审计的财务报表，并在相关税务备案表原件上加章签注本次汇出金额和汇出日期。境内机构利润汇出前应先依法弥补以前年度亏损。八、加强境外直接投资真实性、合规性审核。境内机构办理境外直接投资登记和资金汇出手续时，除应按规定提交相关审核材料外，还应向银行说明投资资金来源与资金用途（使用计划）情况，提供董事会决议（或合伙人决议）、合同或其他真实性证明材料。银行按照展业原则加强真实性、合规性审核。九、实施本外币全口径境外放款管理。境内机构办理境外放款业务，本币境外放款余额与外币境外放款余额合计最高不得超过其上年度经审计财务报表中所有者权益的30%。十、违反本通知规定的，由外汇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依法处罚。十一、本通知自发布之日起施行，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外汇局将定期评估政策实施效果，根据国际收支形势对政策进行调整。以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尽快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和外汇指定银行，并认真遵照执行。　　　 　　 |